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16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오반석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7. 1.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소232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나머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B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는 2019. 3. 23. 원고와 매직캡(미용실에서 퍼머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 개발비를 500만 원, 매직캡 공급대금을 2,500만 원(개당 1,800원)으로 정하여 매직캡 제품개발생산계약(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매직캡의 개발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매직캡 개발비로 위 3,000만 원을 모두 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최소 제작 물량이 6만 개이므로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매직캡 개발비를 3,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2,500만 원어치의 매직캡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3. 20.부터 2019. 4. 23. 사이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매직캡 개발비를 500만 원, 매직캡 공급대금을 2,500만 원(개당 1,8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김한철